

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



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한국전력에서는 소상공인·전통 시장 및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오니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대상

- 일반용, 산업용, 주택용(비주거용)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

※ 주된 업종별로 선정한 불임의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

단독 고객	계약전력 20kW 이하	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 자체 판정
	계약전력 20kW 초과	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번호로 검증 [납기연장 신청 후 2주내 미제출시 납기 연장이 취소됨]
집합 건물	신청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이하 점포	사업자정보 기준으로 한전 자체 판정
	신청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초과 점포	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번호로 검증 [납기연장 신청 후 2주내 미제출시 납기 연장이 취소됨]

* 전통시장고객 : 상인연합회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신청 가능(사이버지점에서 신청불가)

- 주택용(주거용) 전력을 사용하며, 복지할인(정액)을 적용받는 고객

- 복지할인(정액) 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상이자1~3급, 독립유공자

지원내용 : 3개월(4월~6월분)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

※ 당월 납기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당월 요금분부터 납기 연장이 적용됩니다.

신청기간 : '20. 4. 8 (수) ~ 6.30 (화)

신청방법 : 한전 사이버지점, 고객센터(☎123), 관할 지사(FAX등)를 통해 신청

※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(한전 사이버지점, 고객센터) 신청 권장

※ 집합건물 중 자동이체 고객은 자동이체(카드 포함)를 해지하셔야 납기연장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✓ 한전과 직접 계약없이 아파트나 대형 집합 상가에 입주하여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,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한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✓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한 대상자는 해당사업자에게 연장신청하여야 합니다.

신청시 준비사항 : 전기요금 청구서,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

[참고자료] 업종별 소상공인 판단기준(붙임1), 구역전기사업자(붙임2)



문의처 : 사이버지점(cyberkepcoco.kr), 고객센터(국번없이 ☎123 → '0'번)